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공무원임용령」 개정('23. 12. 26.)으로 공무원이 재난·재해 대응을 위한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경우 다른 공무원에게 해당 공무원의 업무 대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, 이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과 업무대행 수당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 군인도 동일하게 적용받기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를 반영하는 것이며 소방, 경찰 등 특정직공무원 동시개정 중임.

3. 주요내용

가.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군인에게 재난 및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군인의 업무 대행을 명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(안 제53조의2제2항)

나. 군인이 재난 및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출장 또는 파견 시 군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군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(안 제53조의2제3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4. ~ 2024. 5.) 예정

3) 부패영향평가 등 요청 : 관계기관과 협의예정

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중인”을 “중인 군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군인과 제2항에 따른 출장 또는 파견 중인”으로 한다.

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군인이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군인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.

부 칙

1.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3조의2(업무를 대행하는 군인 등) ①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53조의2(업무를 대행하는 군인 등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군인이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군인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.</u>
<u>②</u> 제1항에 따라 병가, 출산휴가, 유산·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<u>중인</u> 군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군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	<u>③</u> ----- ----- --- <u>중인 군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군인과 제2항에 따른 출장 또는 파견 중인</u> ----- ----- 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	
연 락 처	(02) 748 - 5121